



제 1035 호

2012년 3월 30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2-	481호	소액수의(환경미화원 춘추복구입)견적제출 안내	2
○ 공고 제2012-	482호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공고	6
○ 공고 제2012-	488호	건축허가(신축)에 따른 도로지정 공고	17
○ 공고 제2012-	4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18
○ 공고 제2012-	492호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 위촉 명단 공고	35
○ 공고 제2012-	493호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공고	36
○ 공고 제2012-	500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7
○ 공고 제2012-	5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공고	38
○ 공고 제2012-	505호	2012년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 공고	45
○ 공고 제2012-	508호	공시송달 공고	48
○ 공고 제2012-	516호	소액수의(감염병·식중독 검사시약 및 기자재구입) 견적제출 안내 공고	51

고 시

○ 고시 제2012-	33호	인천광역시남동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고시	54
○ 고시 제2012-	35호	도로명주소 고시	56
○ 고시 제2012-	36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60

회 람								
----------------	--	--	--	--	--	--	--	--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 48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재공고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명 : 환경미화원 작업복(춘추복) 구입

나. 구입물품 : 144세트 (춘추복 상·하 한 벌)

다. 설계금액 : 17,280,000원

라. 입찰방법 : 견적입찰, 총액입찰

※ 본 입찰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입찰입니다.

마.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붙임 규격서 참조)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사. 납품조건 : 붙임 규격서 참조

아.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2. 03. 26(월) 14:00 ~ 2012. 03. 29(목) 14: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 03. 29(목) 15: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차. 발주부서 및 담당자 : 청소과 남창우 (☎032-453-2556)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증에 해당물품의 제조 또는 판매 관련 종목이 등록되어 있으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우리구에서 제시한 시방서 등 조건에 맞게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중소기업청고시 제2011-18(2011.05.18)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9조 및 제30조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에 “보호용작업복(화학보호복 및 방사능보호복 제외)”(G2B분류번호 46181528)으로 직접생산에 등재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최종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본 공고일로부터 1년간 우리구에서 받주하는 입찰건에 대해서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3. 입찰방식

가. 본 건적은 **총액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의 **90%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11.9.14)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가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제**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 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에 의거 인지세를 국세청을 통해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 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청소과 (032-453-2556 남창우)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재무과 (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03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482호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내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창동과 운연동, 논현동 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동을 서창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3. 2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서창동과 운연동, 논현동 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동을 서창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장수서창동과 논현1동 2개의 행정운영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행정운영동을 장수서창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동인 운연동과 논현동을 서창동으로 변경함
-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내 행정운영동인 논현1동을 장수서창동으로 변경함

4. 입법예고기간 : 2012. 3.27 ~ 4.5(10일간)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내 11블록 아파트 입주가 3.29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향후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히 입법 절차를 추진하고자 함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총무과)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234, FAX 453-218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서창동과 운연동, 논현동 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동을 서창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법정동인 운연동과 논현동을 서창동으로 변경함

☐ 본 문 :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서창동, 운연동과 논현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구월동	구월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628의4, 13, 629의2, 1068의2 제외) 간석동으로 편입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 72의29 제외
	간석동	간석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225-23, 225-88, 225-254, 225-255, 225-256, 225-279, 산37-20, 산38-5제외) 구월동에서 편입된 구월동 71의51, 71의53, 71의55, 71의57, 72의1, 72의31, 72의34, 72의36, 72의38, 72의41, 72의43~47, 72의49~55, 72의29 포함
	만수동	만수동 일원(장수동에서 편입된 68, 681-1, 3, 682-1, 2, 4-8, 11, 12, 684의4, 8, 9, 685의 5-7, 761의1 포함, 구월동에서 편입된 628-4, 13, 629의 2, 1068의 2 포함, 수산동에서 편입된 1의 1, 3, 8, 9, 11, 14, 19, 20, 22, 23, 24, 25, 26, 27, 2의 2, 3, 5, 6, 7, 21, 45, 47, 48, 49, 51, 52, 53, 54, 55, 56, 57, 58, 59, 695의 5, 6, 7, 8, 16, 29 포함, 간석동에서 편입된 225-23, 225-88, 22-254, 225-255, 225-256, 225-279, 산37-20, 산38-5 포함, 서창동으로 편입된 708-3, 709-3, 4, 710-1, 2, 3, 5, 6, 7, 8, 10, 711-1, 4, 712, 713, 714-1, 2, 715-1, 2, 716-1, 2, 717, 717의 1-9, 718의 1-4, 719, 719의 1-5,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1, 2, 730, 730-1, 731, 732, 733-1, 2, 734, 735, 736, 737-1, 738-1, 739-2, 815, 816-1, 3, 817-1, 818-1, 산87-1, 산88-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5, 산111의 3-4 제외, 장수동에서 편입된 685-1, 686, 687, 688-2, 688-4, 688-9, 689-4, 689-6, 689-13, 690-3, 698-3, 698-11, 699-1, 699-6, 700-1, 700-4, 700-5,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10, 710-3, 712, 713, 714, 761, 762 포함)
	장수동	장수동 일원(만수동으로 편입된 681, 681의 1, 3, 682의1, 2, 4-8, 11, 12, 684, 4, 8, 9, 685의 5-7, 761의1 제외, 만수동으로 편입된 685-1, 686, 687, 688-2, 688-4, 688-9, 689-4, 689-6, 689-13, 690-3, 698-3, 698-11, 699-1, 699-6, 700-1, 700-4, 700-5,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10, 710-3, 712, 713, 714, 761, 762 제외)
	서창동	서창동 일원(만수동에서 편입된 708-3, 709-3, 4, 710-1, 2, 3, 5, 6, 7, 8, 10, 711-1, 4, 712, 713, 714-1, 2, 715-1, 2, 716-1, 2, 717, 717의 1-9, 718의 1-4, 719, 719의 1-5,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1, 2, 730, 730-1, 731, 732, 733-1, 2, 734, 735, 736, 737-1, 738-1, 739-2, 815, 816-1, 3, 817-1, 818-1, 산87-1, 산88-1, 산89의 3-6, 산91의 3-4, 산99의 1-2, 산100-5, 산111의 3-4 포함) 운연동에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포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운연동	운연동 일원 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도림동	도림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584의31, 584의37, 584의6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6, 594의68-78,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2, 626의1-44, 627의1-3, 산103의1-2, 산104제외, 논현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626의9, 626의45-50, 627의28 제외) 논현동으로 편입된 도림동 584의 97-98, 594의 20-23, 34, 36, 44, 45, 46, 48, 50, 51, 79, 80, 87-91, 595, 596 의 1-2, 597의 3-5, 498의4, 600의1, 601-607, 607의1-2, 620의1-2, 621의2, 산93의3, 산94의3, 산96의2, 산96의3, 산97의2-4, 산98, 산100, 산100의1-5, 산102, 산102의1-5, 산103의3 제외
	수산동	수산동 일원 (만수동으로 편입된 1의 1, 3, 8, 9, 11, 14, 19, 20, 22, 23, 24, 25, 26, 27, 2의2, 3, 5, 6, 7, 21, 45, 47, 48, 51, 52, 53, 54, 55, 56, 57, 58, 59, 595의5, 6, 7, 8, 16, 29 제외
	남촌동	남촌동 일원(도림동에서 편입된 도림동 584의31, 584의37, 584의63-70, 594의24-33, 594의35, 594의37-43, 594의52-57, 594의59-66, 594의68-7, 596의3, 617의1, 620-623, 624의1-14, 625의1-41, 626의1-44, 627의1-3, 산 1031-2, 산104 포함, 논현동에서 편입된 논현동 472의8-11, 474의1, 481의3, 624의 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84의1,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597의69-72 포함)
	논현동	논현동 일원(남촌동으로 편입된 논현동 472의8-11, 474의1, 481의3, 524의1-6, 525의1-4, 526의1-32, 526의42-45, 527의1-3, 548의1, 산94의1-2, 산94의4-5, 산94의10-11, 산95의2, 산96의1, 산97의3, 산102의1, 산103의13-14 제외, 도림동에서 편입된 도림동 626의9, 626의45-50, 627의28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의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6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97-3, 산80의3 포함) 고잔동으로 편입된 383의25, 412의20, 21, 22, 23, 415의 57, 58 제외, 고잔동에서 편입된 255-6 포함 남촌동에서 편입된 남촌동 551의1-4, 도림동에서 편입된 도림동 552의1-41, 산 105의 1-21 포함

구 별	명 칭	관 할 구 역
남동구	논현동	고잔동에서 편입된 고잔동 81의1, 83의1-2, 83의4, 83의6, 84의1-4, 85의1-2, 85의4-6, 86의20-23, 87, 88의1-5, 89, 89의1-3, 90, 91의1, 92의7, 94의1-4, 94의8-14, 94의16-25, 95의1-2, 96, 97의1-10, 98, 99의1-2, 100의1-6, 101, 102, 103, 104, 105, 106, 106의1, 107, 108, 109, 110, 111, 112, 113의1-4, 114, 114의1-4, 115, 116, 117의1-3, 118의1-2, 119의1-8, 119의10-11, 119의13-21, 119의23-24, 119의26-28, 120의11, 121의6-10, 122, 123, 124의1, 127의4, 581의3-4, 586의11, 586의13-15, 586의26, 589, 590, 590의1-3 포함 고잔동에서 편입된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고잔공원 제외) 및 고잔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포함 서창동으로 편입된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
	고잔동	고잔동 일원 (남촌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69-72제외 논현동으로 편입된 고잔동 597의2-3, 597의6-25, 597의27-59, 597의61-63, 597-65, 598의8-10, 598의28-34, 599의1-6, 601의1 602의1, 603의3, 622, 산72의2, 산77의1-4, 산79의3, 산80의3 제외) 논현동에서 편입된 383의25, 412의20, 21, 22, 23, 415의57, 58포함, 논현동으로 편입된 255-6 제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장수서창동과 논현1동 2개의 행정운영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의 행정운영동을 장수서창동으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주민의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행정운영동인 논현1동을 장수서창동으로 변경함

☐ 본 문 : “별첨”

☐ 참고자료

인천광역시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장수서창동과 논현1동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행정운영동의 명칭·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제2조 관련)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계	19	19	
	구월동	4	구월1동	구월동 201, 258, 260의 5호, 277-294, 300-301, 426-550, 577, 578의1, 2호, 580의1, 4, 5, 8호, 581-582, 583의4호, 584-596, 688의2, 7, 16호, 689-896, 1124-1240, 1408-1447번지 일원
			구월2동	구월동 2-7, 20-26, 69-70, 341-342, 1251-1254번지 일원
			구월3동	구월동 산16, 산62, 산82-84, 179-180, 961의1호-969, 1034-1040, 1086-1123, 1342-1407번지 일원
			구월4동	구월동 산1-9, 산16의1호, 349, 551, 557-575, 580의6, 7호, 583의1호, 597-687, 688의1, 9호, 1255-1320번지 일원
	간석동	4	간석1동	간석동 177, 178, 331-333, 340-343, 351-353, 358, 397-406, 410-459, 463, 466-467, 470, 472, 481, 484-490, 492-520, 523, 542-559, 730-734, 758, 산83번지 일원
			간석2동	간석동 129-130, 133-146, 151, 153-160, 163-166, 182-197, 200-203, 205-210, 216, 217, 220-222, 228-241, 247-257, 267-271, 273, 275-277, 280-289, 295, 296, 298-313, 316-320, 326-328, 334-339, 344-348, 350, 구월동 71, 72번지 일원
			간석3동	간석동 1-10, 12, 20-24, 26, 28, 29-34, 37, 39-67, 69-115, 117-125, 167-175, 179, 180, 211, 212, 214, 224, 225, 227, 735, 736, 745, 746, 767, 산12, 산86번지 일원
			간석4동	간석동 359-362, 364-376, 378-384, 387-395, 524-537, 560, 561-613, 616의82, 83, 84, 85, 86, 762번지 일원

구 명	법정동	동장수	행 정 운영동	관 할 구 역
남동구	만수동	6	만수1동	만수동 346-353, 367-373, 422-424, 927-937, 948-983, 1005번지 일원 만수동 590의1호, 590의10호, 594의1호-594의20호, 808의42호,43호
			만수2동	만수동 산20, 1-5, 6-12, 41의1호, 32의8호, 35의8, 38의2호, 68, 71-76, 79, 80의1호-80의201호, 80의252호-80의486호, 80의500호-80의520호, 81, 83, 101-105, 107의21호, 867-874,1115-1번지 일원
			만수3동	만수동 80, 107, 109-111, 116, 844, 850-855, 857-866, 산1, 산11번지 일원
			만수4동	만수동 13, 17, 20, 29, 35, 46, 49-67, 84-90번지 일원
			만수5동	만수동 875-926, 938-947번지 일원
			만수6동	만수동 289-291, 332-339, 600-810, 984-987, 1008-1049번지 일원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1	장 수 서창동	장수동, 서창동, 운연동 일원 인천서창(2) 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도림동 수산동 남촌동	1	남 촌 도림동	도림동, 수산동, 남촌동 일원
	논현동	2	논현1동	논현동 1-66, 68, 109-112, 322, 549, 577, 591-605, 607-17, 651-69, 671-80, 산1-산30번지 일원 인천서창(2)보금자리주택지구 일원 제외(1-1외 19필지)
			논현2동	논현동 423, 427-30, 432-440, 442-451, 453-454, 473, 491, 505-507, 513, 543, 553-554, 559, 560-564, 580, 582-583, 585-586, 588-590, 618, 633-635, 643, 산75-78, 산80, 산84-86, 산94, 산105번지 일원
	논현동 고잔동	1	논현고잔동	논현동 179, 264, 269, 272, 359, 383, 409, 630, 650, 756, 970, 산13-산16, 산19-산20번지 일원, 고잔동 일원, 소래논현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고잔구역도시개발사업지구 일원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488호

도로의 지정 · 공고

건축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위치를 지정 · 공고합니다.

2012년 03월 27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도로 현황

- 가. 위 치 : 수산동 94-13, 94-31
- 나. 도로길이 : 47.23m
- 다. 도로너비 : 3m
- 라. 도로면적 : 165m²
- 마. 토지소유자 : 김정옥
- 바. 도로지정사유 : 건축허가(신축)

2. 건축허가 현황

- 가. 위 치 : 수산동 94-13
- 나. 건 축 주 : 김 정 옥
- 다. 용 도 : 단독주택
- 라. 규 모 : 연면적 198.43m², 지상3층.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490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3.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사무위임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안 제1조)

- 수임기관에 사업소(남동문화예술회관) 추가

나.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 사무의 권한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위임부서 지정
- 관행적 처리 업무 위임근거 부여(직원복무, 물품 불용 등)

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특정사무의 구본청과 하부기관 동시 처리권한 부여
(위임조례 ⇒ 내부위임 규정으로 변경)

라.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 조정(안 별표 1, 2, 3, 4, 5)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제104조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6.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년 3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사무위임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주민편의와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사항 반영 (안 제1조)
 - 수임기관에 사업소(남동문화예술회관) 추가
- 현행 조례의 미비점 보완
 - 사무의 권한과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위임부서 지정
 - 관행적 처리 업무 위임근거 부여(직원복무, 물품 불용 등)
- 수요자 중심의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 도모
 - 특정사무의 구본청과 하부기관 동시 처리권한 부여
(위임조례 ⇒ 내부위임 규정으로 변경)
- 소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하는 사무 조정(안 별표 1, 2, 3, 4, 5)

☐ 본 문 :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참고자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같은 법 제 10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을 “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 하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총 무 과	1.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2.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재 무 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2]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식 품 위생과	1.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의 개설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폐업 신고 다. 시정명령 등 라. 개설허가의 취소 등 마. 보고와 업무 검사 등 바. 부정의료업자 단속 사. 조산원의 지도의사 신고 아. 의료지도원 임명 자.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징수 등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의료법」 제40조 「의료법」 제63조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61조 「의료법」 제64조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의료법」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의료법」 제84조 「의료법」 제67조 「의료법」 제92조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운영 나. 지도·감독	「의료법」 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3. 안마시술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개설신고 및 사항변경 나. 지도·점검 다. 행정처분	「의료법」 제82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8조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4. 치과기공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과기공소 인정 나.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식 품 위생과	5.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나. 안경업소 등록사항 변경 및 휴·폐업신고 수리 다. 안경업소의 지도·감독 라. 안경업소에 대한 시정명령 및 개설등록의 취소 등 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6. 약국의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 가. 약국 개설등록 나. 폐업, 휴업, 재개업 및 변경신고 다.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약사법」 제20조 「약사법」 제22조 「약사법」 제76조	
	7. 대마재배에 관한 권한 가.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신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8. 의료기기 판매업 등에 관한 권한 가.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 나. 의료기기 변경신고 다. 휴·폐업 신고 라.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16조 「의료기기법」 제11조 「의료기기법」 제13조 「의료기기법」 제32조	
	9.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권한 가. 시체해부 나. 시체해부 명령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조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6조	
	10.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주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업무 나. 건강확인의 내용 및 절차 업무 다. 금연 및 절주운동 등에 관한 업무 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보건교육의 실시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식 품 위생과	바.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사.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아.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업무 1)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사업 2) 기타 구강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자.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업무	「국민건강증진법」 제15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2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8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3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11. 전염병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나.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다.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라. 전염병 정보의 분석 및 제공 마.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바.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재 내성감시 사. 건강진단 등의 명령 아. 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자. 공·사립 의료기관대응 차. 전염병환자 격리수용 치료 카. 제1군전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조치 타. 제1군전염병예방조치 파. 전염병예방상 필요한 소독조치 하. 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전염병예방법」 제3조의2 「전염병예방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전염병예방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전염병예방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전염병예방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전염병예방법」 제37조 「전염병예방법」 제39조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전염병예방법」 제42조	
	12.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영업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다. 영업의 정지명령 등 라. 소독업자에 대한 기타 행정처분 마. 소독업무의 대행 명령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4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식 품 위생과	13. 결핵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방접종의 공고 나.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다.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 및 보고 라. 환자의 취업제한 및 재취업 마. 입원명령 바. 전염성결핵환자의 의료	「결핵예방법」 제15조 「결핵예방법」 제18조 「결핵예방법」 제19조 「결핵예방법」 제23조 및 제24조 「결핵예방법」 제25조 「결핵예방법」 제29조	
	14. 기생충질환 예방에 관한 권한 가. 수거·검사	「기생충질환예방법」 제4조	
	15.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감염자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수립 나. 검진 및 역학조사 다. 치료권고 라. 치료 및 보호조치 등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4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5조	
	16. 전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기 또는 임시예방접종 나. 예방접종의 공고 다. 예방접종의 증명서교부 라.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 마. 예방접종약등의 용도변경 및 폐기처분 바. 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전염병예방법」 제11조 및 제12조 「전염병예방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전염병예방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전염병예방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0조의2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제4조의2 「전염병예방법」 제21조의3	
	17.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모자보건수첩 발급 나.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 관리 등 다. 임산부 안전분만 조치 라. 피임시술 및 피임약제의 보급	「모자보건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모자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식 품 위생과	마. 안전분만 조치, 피임시술 및 피임 약제 보급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바. 과태료 부과 · 징수	「모자보건법」 제23조 「모자보건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18. 암관리 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암관리세부집행계획 수립	「암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19.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치매관리사업	「노인복지법」 제29조	
	20.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수시 건강진단 실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21.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탁물 처리업 신고 나. 지도 및 보고	「의료법」 제16조 및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7조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제11조	
	22.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정신의료기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나. 과징금처분 다.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 라. 사회복귀시설의 폐지 · 휴지 · 재개신고 마. 사회복귀시설의 폐쇄 등 바. 청문 사. 보고 · 검사 등 아. 과태료의 부과 · 징수 자. 퇴원자 일시적 보호조치 차. 정신보건자문의 위촉	「정신보건법」 제12조 「정신보건법」 제1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정신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정신보건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정신보건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정신보건법」 제20조 「정신보건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정신보건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	
	23. 의료인 단체 설치신고	「의료법」 제28조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총 무 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재 무 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3]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총 무 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재 무 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4]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청 소 과	1.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도·감독, 법령 또는 명령위반에 대한 조치 나. 건축관련 규정에 의하여 권한위임된 건축물의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설치(변경)신고 수리 및 준공검사 다.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등의 수리 라. 업무처리실적 보고·검사	「하수도법」 제39조 「하수도법」 제34조 「하수도법」 제66조 「하수도법」 제69조	
	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사업장 폐기물 관리사무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3. 폐기물관리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4.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39조	
	5.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경 제 지원과	1. 공단중소기업관리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0조	
건 설 과	1. 도로의 공사와 유지관리	「도로법」 제23조	
건 축 과	1. 연면적 1,650㎡이하인 건축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착공신고 등 사용승인 나.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건축법」 제21조 및 제22조 「건축법」 제36조	
도 시 공원과	1.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정비	「도로법」 제45조	
	2.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광고물 단속정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총 무 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재 무 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별표 5]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 임 자 (소관부서)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 고
복지 정책과	1.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제3항	
노 인 장애인과	1.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기초노령연금 지급 신청처리	「기초노령연금법 시행령」 제6조	
	3. 장애인 등록 및 장애 진단사항 확인	「장애인복지법」 제3조	
	4. 장애인 자동차 표지의 발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	
청 소 과	1. 폐기물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총 무 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마. 출장처리 바.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명령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8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같은 조례 제8조 같은 조례 제7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4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 (단,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하되 구 청장도 발급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주민등록법」 제30조	
재 무 과	1. 물품 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 폐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인천광역시남동구 구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 91조제2항 및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u>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u>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u>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출장소장, 동장</u>에게 위임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사항) <u>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u>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u>의회사무국장</u>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u>직속기관장(보건소장)</u>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2”, <u>출장소장</u>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u>동장</u>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와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1조(목적) ----- -----<u>같은 법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u>----- -----<u>의회사무국장, 직속기관장(보건소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동장</u>----- ----- ----- 제2조(위임사항) <u>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u> ----- ----- ----- -----<u>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5”와 같다.</u>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따라-- ----- ----- ----- -----

실 · 과 · 소 · 동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 · 과 · 소 · 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 ~ ○ 내 용 - 의견수렴		○ 반 영 “입법부서의 의견을 기재함.”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 ~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 미 반 영 “입법부서의 의견을 기재함.”	

☞ 의견수렴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 「별지작성」

☞ 관계 실 · 과 · 소 · 동 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
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
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492호

공 고 문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위원 위촉 명단

성 명	분 야	소속 및 직위	위촉일
이규천	공공부분(보건)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동지사장	2012.3.26
김순길	공공부분(주거)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복지부장	2012.3.26
김한경	공공부분(교육)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2012.3.26
최동호	민간부분(보건)	남동구 의사회장	2012.3.26
강희자	민간부분(아동복지)	남동구 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2012.3.26

■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위원 위촉 명단

성 명	분 야	소속 및 직위	위촉일
김기범	민간부분(다문화)	남동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2012.3.26

2012. 3.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493호

공 시 송 달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진행을 위하여 같은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자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12. 3.28 ~ 2012. 4.16(20일)

2. 공고사항

○ 제 목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청문 실시

○ 당사자 :

업 종	신고번호	업소명	업주명	소재지
목욕장업	2007-002	로데오21 사우나	황문호 김범수 박원선 하용남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463-2 B101호,102호

○ 처분내용 : 직권폐업

○ 처분사유 : 영업시설물 무단멸실

○ 법적근거

- 공중위생법 제3조 및 제11조

○ 청문내역

- 기 관 명 : 인천광역시남동구청

- 담당부서 : 식품위생과 식품위생팀(032-453-2622)

- 청문일시 : 2012. 4. 16(월) 11:00

- 청문장소 : 남동구청 식품위생과(4층) 사무실

- 청문주재자 : 남동구청 식품위생과 위생지도팀장

3. 기타 : 청문일 이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청문에 출석한 것으로, 청문에 불참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 됨.

2012. 3.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제2012- 5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예고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위반차량	위반장소 (위반일시)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김인준	인천 남동구 구월남로48 번길 15, 101호(구월동, 공원주택)	인천33러6167	간석동 홈플러스 장애인주차장 (2012.3.13 17:00경)	2012.3.21	2012.3.28	수취인불명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12. 03.28 ~ 2012. 04. 11(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노인장애인과(☎032-453-25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 03.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02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의 감사업무 자체전담기구 설치 및 감사기구의 장의 개방형 전환을 의무화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실장의 개방형 직위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 3. 2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는 부단체장 직속의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감사책임자가 자체감사기구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자체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 개정내용

- 가. 감사기구의 장의 개방형 직위 임용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3조의 2 제2항)
- 현행 :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함
 - 개정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음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4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405-7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남동구청 / ☎ 453-2052, FAX 453-2059)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별첨

※ 이 규칙(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2년 3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인구 30만 이상 자치단체의 감사업무 자체전담기구 설치 및 감사기구의 장의 개방형 전환을 의무화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감사실장의 개방형 직위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

-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조의 2 제2항 신설)
 -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지방전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비용추계서
 - 추가소요인건비 : 연간 약△8,508천원

남동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2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감사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u>< 신 설 ></u>	제3조의2(감사실) ①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실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비용소요 추계서

1. 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 3항

2. 주요 변동내역

○ 감사실장의 임용방법 규정

《현행》 지방행정사무관(5급26호봉) ➡ 월 봉급액 3,737,900원

《개정》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연봉등급 5호 : 36,534천원)

➡ 신규임용 연봉 130%범위내 책정 가능(47,495천원)

3. 비용소요 내역

구 분	계	봉급 (연봉)	정근 수당	수 당								성 과 상여금
				가족 수당	학비 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정 액 급식비	명 절 휴가비	연 가 보상비	직책급	직 보 조비	
증 감	△8,508	2,640	△3,738	-	-	-	-	△4,486	△134	-	-	△2,700
현 행	65,342	44,855	3,738	730	334	1,560	1,560	4,486	1,179	1,200	3,000	2,700
개방형	56,924	47,495	-	730	334	1,560	1,560		1,045	1,200	3,000	-

※ 초과근무수당 등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인 수당은 추계하지 아니함.

실 · 과 · 소 · 동별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실 · 과 · 소 · 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려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 ~ ○ 내 용 - 의견수렴		○ 반 영 “입법부서의 의견을 기재함.”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 기 간 - ~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 미 반 영 “입법부서의 의견을 기재함.”	

☞ 의견수렴결과 및 입법예고결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표기하고
 내용이 많을 경우 각각(의견수렴, 입법예고)의 서식으로 「별지작성」

☞ 관계 실 · 과 · 소 · 동 간의 합의 내용 기재, 특히 법령, 조례, 규칙, 예산, 규제 등
에 관한 필요적 합의부서는 반드시 합의하도록 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
여는 미 합의된 사실을 적시하여 조례 · 규칙심의회에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05호

2012년도 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을철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3. 29.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실시목적

- 주요 가축전염병 근절대책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생산비 절감 축산물 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성 제고
- 가축전염병의 발생 미연방지 및 축산업 발전 도모

☐ 실시지역 : 남동구 전지역

☐ 실시기간 : 2011. 4. 9. ~ 4. 27. (19일간)

☐ 질병의 종류 및 대상가축

- 소 : 탄저·기종저, 유행열, 아까바네병, 설사병
- 돼지 : 유행성설사병, 열병, 단독, 일본뇌염
- 개 : 광견병
- 닭 : 뉴캐슬병

☐ 특이사항

- 광견병 예방접종은 동물병원으로 내방하여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 예방백신 부족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습니다.

□ 시술자 : 관내 공개업수의사 26명

상 호	성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덕수동물병원	고 종 길	구월1동 1206-5 1층	467-8575	구월동
쿨펫동물병원	배 병 선	구월1동 1130 홈플러스 지하2층	437-7582	
보람동물병원	문 우 상	구월3동 1394-9	429-1673	
자연동물병원	유 재 현	구월4동 1240-3	468-6406	
다비드동물병원	김 종 한	구월4동 1271-11	464-1475	
주주동물병원	이 재 설	간석1동 343-5	442-9111	간석동
동암동물병원	박 철	간석1동 570-5	437-5535	
위드동물병원	황 보 찬	간석1동 900-138	441-5155	
24시독스동물병원	김 광 수	간석2동 210-2	432-0075	
도그인동물병원	김 용 희	간석3동 914	433-3440	
세우리동물병원	이 행 숙	간석3동 921-15	463-9066	
마이펫동물병원	박 경 환	간석4동 216-4	428-8275	
D&C동물병원	이 인 재	간석4동 573-1	434-7525	
젼마동물병원	송 재 근	만수1동 948-4	464-4488	만수동
신진동물병원	황 의 담	만수1동 961-31	463-8801	
좋은친구들동물병원	김 승 곤	만수2동 869-11	469-7782	
신세계동물병원	최 진 하	만수5동 897-2 105호	468-7533	
행복한동물병원	박 신 미	만수5동 916-2	469-7588	
만수동물병원	류 태 권	만수6동 1025-11	467-8450	
해맑은동물병원	박 철 병	만수6동 1079-3	469-8275	
필종합동물병원	이 재 필	남촌동 333-5	462-2550	남촌도림동
에코동물병원	도 래 선	논현동 608-3 선하우스 1층	666-7282	논현동
해피동물병원	이 정 준	논현동 619-15(3B4L) 1층	439-8822	
한화동물병원	안 기 주	논현동 733-5	441-7582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안내

남동구청에서는 광견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봄철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무료로 실시합니다.

1. 접종계획 : 3,500두
2. 접종기간 : 2012. 4. 9. ~ 4. 27. (19일간)
3. 접종대상 : 개(애완견 포함)
4. 접종장소 : 관내 동물병원
5. 접 종 비 : 무 료
6. 실 시 자 : 동물병원 수의사
7. 문 의 처 : 남동구청 경제지원과(☎453-2709)
8. 동별 실시계획

동 별	예방접종 실시 동물병원명(전화)	비고
합 계	24개소	
구월동	덕수(467-8575), 보람(429-1673), 자연(468-6406), 다비드(464-1475), 쿨팻동물병원(437-7582)	
간석동	24시독스(432-0075), 위드(441-5155), 마이펫(428-8275), 도그인(433-3440), 세우리(463-9066), 동암(437-5535), D&C(434-7525), 주주(442-9111)	
만수동	신진(463-8801), 켄마(464-4488) 신세계(468-7533), 행복한종합(469-7588), 만수(467-8450) 해맑은(469-8275), 좋은친구들(469-7782)	
남촌동	필종합(462-2550)	
논현동	에코(666-7282), 해피(439-8822), 한화(441-7582)	

- 주) 1. 각 동물병원에서 선착순 접종하니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접종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광견병은 매년 1회 접종을 하여야 합니다)
2. 계획된 사업물량 초과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 가을철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개는 **예방접종증명서**를 담당 수의사로부터 발급받아 1년이상 보관하고, 반드시 옥내에서 묶어 길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08호

공시송달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해당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우편을 이용하여 이를 고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로명주소를 고지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30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물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고지대상자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및 부여사유
별도열람				

※ 도로명주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토지정보과(전화:032-453-2470) 및 구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고 기간 : 2012.3.30(금) ~ 2012.4.20(금) 22일간

○ 도로명주소 부여(고시)일 : 2012.03.16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03.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고지내용의 정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 032-453-24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고지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고지대상자	생년월일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및 부여사유
1	고**	1957-12-30	별도열람	별도열람	별도열람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2-516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 감염병·식중독 검사시약 및 기자재 구입
- 나. 구입물품 : 식중독검사용배지외 37종 (붙임 규격 및 산출내역서 참조)
- 다. 설계금액 : 24,989,740원
- 라. 입찰방법 : 견적입찰, 총액입찰
- 마. 납품기한 :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
- 바. 납품장소 : 발주부서 지정장소
- 사. 납품조건 : 의약품 유효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이상
 ※ 단, 사용기한이 1년 이하인 경우 유통기한이 1/2이상
- 아.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 2012. 04. 02(월) 10:00 ~ 2012. 04. 05(목) 10:00
-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12. 04. 05(목)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차. 발주부서 및 담당자 : 보건소 보건행정과 함양애(☎032-453-5136)
-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입찰 참가 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나.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득한 자로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3. 입찰방식

- 가. 본 견적은 총액입찰이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 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 본 입찰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복수예가)의 **87.74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1호, 2010.10.26)규정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동가의 경우에는 추첨결정)

나.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pm 3\%$ 상당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렬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전자입찰시스템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같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8. 전자계약 체결

우리구에서는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우리구에서 송신하는 계약서 초안에 3일이내에 응답하여야 하며, 전자계약서의 상호 인감날인은 생략합니다.

9. 기타사항

-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기타입찰조서,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물품내역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행정과(032-453-5136 함양애)로 문의하여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참여하시고, 입찰에 관한 문의는 남동구 재무과(032-453-2266 최현철)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분임)경리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33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남동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28.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고 시 일 : 2012. 3. 28
- 고시방법 : 구보 및 구 홈페이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재
- 고시내용 : 남동구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에 관한 사항

구분	신규	비고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7	세부내용은 붙임참조

※ 도로구간 및 도로명 부여 관한사항(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및 관할 행정구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 고시/ 공고란 게재

○ 도로구간 등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도로구간 및 도로명 변경 신청 주소사용자의 5분의1 신청	신청을 받은 날부터 ⇒ 10일 이내	주민 의견 수렴 공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수렴한 날부터 ⇒ 30일 이내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 도로명주소위원회 개최 심의 마친 날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심의 결과 내용 및 절차	공고한 날부터 ⇒ 30일 이내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상	동의 얻은 날로부터 (동의 생략 포함) ⇒ 10일 이내	고시 및 신청인 통보 변경사항 및 변경기준일
		서면 동의를 못 받은 경우 주소사용자의 1/2 이하	동의 만료일부부터 ⇒ 10일 이내	공고 및 신청인 통보 결과 통보

※ 도로명변경은 최초 도로명 고시일 3년 경과 후 가능함

※ 폐지된 도로명은 최소한 5년 동안은 도로명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 032-453-24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구간 및 도로명 고시 조서

구간	도로 위계	행정구역	도로명	도 로 구 간					기초 간격 (m)	기초 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유사 도로명	도로구간 설정일	도로구간 부여고시일
				길이 (m)	폭 (m)	시작지점	끝지점	중심선						
1	로	논현동, 서창동 만수동, 수산동	서창남로	3,038	25	논현동 1-12	수산동 378-2	도로망도 참조	20	1~304	서창동 남쪽에서 시작되는 도로임을 인용하여 제명		2012.03.28	2012.03.28
2	로	논현동, 서창동	서창남순환로	2,271	25	서창동 104-21	논현동 1-14	도로망도 참조	20	1~228	서창남로 기준으로 순환하는 도로 의미를 인용하여 제명	서창남순환로 10번길외4	2012.03.28	2012.03.28
3	길	서창동	서창남순환로10번길	246	10	서창동 111	서창동 산24-1	도로망도 참조	10	1~48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서창남순환로외4	2012.03.28	2012.03.28
4	길	서창동	서창남순환로62번길	403	10	서창동 127-1	서창동 산29-17	도로망도 참조	10	1~80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1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서창남순환로외4	2012.03.28	2012.03.28
5	길	서창동	서창남순환로160번길	561	10	서창동 500-1	서창동 502-51	도로망도 참조	10	1~110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서창남순환로외4	2012.03.28	2012.03.28
6	길	논현동	서창남순환로215번길	380	25	논현동 1-11	논현동 1-52	도로망도 참조	10	1~74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5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서창남순환로외4	2012.03.28	2012.03.28
7	길	논현동	서창남순환로216번길	284	25	논현동 1-11	논현동 1-11	도로망도 참조	10	1~56	서창남순환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15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서창남순환로외4	2012.03.28	2012.03.28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35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3. 3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 부여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68번길 10외 8건
- 폐지대상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97번길 8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별 도 열 램(9건)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 고	
별 도 열 램(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토지정보과(☎032-453-2470)에 문의 또는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2.3.3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 12. 31.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남동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			도로명 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4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168번길	10	20091116	용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8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용천로168번길 1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을 건물번호로 부여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8-8,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97번길	10	20091116	석산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98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석산로197번길 10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을 건물번호로 부여	
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54-7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20번길	115	20091116	호구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20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호구포로120번길 11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5를 건물번호로 부여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R 4-5	인천광역시 남동구	एको중앙로139번길	10-16	20110324	एको중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39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에코중앙로139번길 10-16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0-16 을 건물번호로 부여	
5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91-5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111	20091116	앵고개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98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697번길 111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11을 건물번호로 부여	
6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680-2	인천광역시 남동구	아암대로	1605	20090706	도로에 접하여 있는 아암도의 이름을 인용하여 제명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아암대로 160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605 을 건물번호로 부여	
7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558-1	인천광역시 남동구	독곡로16번길	15	20091116	독곡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0m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하는 도로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독곡로16번길 15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15를 건물번호로 부여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소래논현도 시개발사업 지구도서관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	793	20090706	앵고개라는 고개를 관통하는 도로임을 반영하여 제명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앵고개로 793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793 을 건물번호로 부여	
9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동	229-4	인천광역시 남동구	운연로	9	20091116	행정구역명(운연동)을 이용하여 운연로로 제명	2012.03.30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가 운연로 9번 기초구간에 위치하여 9를 건물번호로 부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97번길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8-8	2012.03.3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석산로197번길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138-11	2012.03.3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3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697번길	109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191-5	2012.03.3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18-14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215-33	2012.03.3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2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58-1	2012.03.3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522번길	3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358-2	2012.03.3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14번길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35-3	2012.03.30	건물 말소에 따른 폐지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2-36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소래 어시장 기반시설정비(소래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설 지적측량 기준점(지적삼각보조점 및 지적도근점)에 대하여 그 성과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03월 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측량기준점 명칭및번호	평면직각종횡선수치		표 고 (m)	경 위 도	
	X(m)	Y(m)		경도(L)	위도(B)
“별		첨”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및 세계측지계(GRS80좌표계)				
소 재 지	별 첨				
설 치 년 월 일	별 첨				
측량성과 보관장소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신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세계측지계성과(GRS80)		평면직각종횡선수치(중부)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	지적삼각보조점	남동보26	533625.124	175702.002	433319.26	175631.72	2012.01.09	주석	논현동 611-7	세계측지좌표 산출
2	지적삼각보조점	남동보27	533128.168	176832.587	432822.29	176762.31	2012.01.09	주석	논현동 111-13	세계측지좌표 산출
3	지적삼각보조점	남동보31	534808.499	175667.975	434502.65	175597.68	2012.01.09	주석	도림동 310-6	세계측지좌표 산출
4	지적삼각보조점	남동보32	534793.279	176850.888	434487.45	176780.58	2012.01.09	주석	논현동 32-18	세계측지좌표 산출
5	지적삼각보조점	남동보50	534065.041	176536.886	433759.19	176466.60	2012.01.09	표철	논현동 720	신설
6	지적삼각보조점	남동보51	534179.946	176759.669	433874.12	176689.38	2012.01.09	표철	논현동 682-1	신설
7	지적삼각보조점	남동보52	533463.897	176921.092	433158.05	176850.81	2012.01.09	표철	논현동 111-295	신설

지적측량기준점 관리대장

일련 번호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세계측지계성과(GRS80)		평면직각중형선수치(중부)		설치일자	표지 구분	토지소재지	비고
			X(m)	Y(m)	X(m)	Y(m)				
1	지적도근점	4378	534120.461	176715.368	433814.61	176645.08	2012.01.19	철재	논현동 577-1	신설
2	지적도근점	4379	534047.305	176746.832	433741.45	176676.55	2012.01.19	철재	논현동 577-1	신설
3	지적도근점	4380	533961.491	176761.535	433655.64	176691.26	2012.01.19	철재	논현동 68-50	신설
4	지적도근점	4381	533936.959	176695.928	433631.11	176625.65	2012.01.19	철재	논현동 66-17	신설
5	지적도근점	4382	533836.289	176753.489	433530.45	176683.21	2012.01.19	철재	논현동 66-17	신설
6	지적도근점	4383	533878.591	176850.666	433572.75	176780.38	2012.01.19	철재	논현동 66-66	신설
7	지적도근점	4384	533909.157	176949.387	433603.32	176879.10	2012.01.19	철재	논현동 26-1	신설
8	지적도근점	4385	533785.955	176991.041	433480.12	176920.76	2012.01.19	철재	논현동 26-1	신설
9	지적도근점	4386	533598.968	176988.135	433293.13	176917.86	2012.01.19	철재	논현동 66-30	신설
10	지적도근점	4387	533404.969	177026.047	433099.13	176955.78	2012.01.19	철재	논현동 111-329	신설
11	지적도근점	4388	533345.985	176965.609	433040.14	176895.34	2012.01.19	철재	논현동 111-339	신설
12	지적도근점	4389	533305.419	177023.422	432999.57	176953.15	2012.01.19	철재	논현동 111-198	신설
13	지적도근점	4390	533267.557	176995.257	432961.70	176924.99	2012.01.19	철재	논현동 111-200	신설
14	지적도근점	4391	533194.803	176942.416	432888.94	176872.14	2012.01.19	철재	논현동 111-353지선	신설

15	지적도근점	4392	533198.078	176755.112	432892.21	176684.83	2012.01.19	철재	논현동 727-1	신설
16	지적도근점	4393	533240.062	176816.130	432934.19	176745.85	2012.01.19	철재	논현동 179-76	신설
17	지적도근점	3803	533374.638	176771.429	433068.77	176701.15	2012.01.20	철재	논현동 728-10	기존
18	지적도근점	3802	533486.975	176737.471	433181.11	176667.19	2012.01.21	철재	논현동 111-6	기존
19	지적도근점	4394	533582.405	176719.716	433276.54	176649.43	2012.01.19	철재	논현동 111-6	신설
20	지적도근점	4395	533664.544	176698.767	433358.68	176628.48	2012.01.19	철재	논현동 111-6	신설
21	지적도근점	4396	533772.419	176663.329	433466.56	176593.05	2012.01.19	철재	논현동 111-450	신설
22	지적도근점	4397	533893.964	176636.610	433588.11	176566.33	2012.01.19	철재	논현동 109-2	신설
23	지적도근점	4398	534022.332	176562.544	433716.48	176492.26	2012.01.19	철재	논현동 658-23	신설